

장애인 건강, 어디서부터 해결할까?

건강검진 제도와 현황을 중심으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장애인정책리포트

월간 **한국장총** 2022.06.30. _ Vol.420

함께하는 회원단체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산정장애인협회,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한국장르장애인협회, 한국한센총연합회,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 한국장애인문화협회, 한국장애인기업협회, 장애인문화예술진흥개발원,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인천장애인단체총연합회, 광주장애인총연합회,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울산장애인총연합회, 강원도장애인단체연합회, 충청북도장애인단체연합회, 충청남도장애인단체연합회, 전라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 경상북도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경상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단체협의회,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장애인 건강, 어디서부터 해결할까?

건강검진 제도와 현황을 중심으로

글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임선정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을 증진할 권리를 가지며 성별·연령·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검진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않도록 명시되어있음. 장애인들이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는 시설과 장비, 인력이 제공되어야 함.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건강권법)」에 따라, 정부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공모 지정하고 있으나 민간의 참여는 저조한 실정임. 건강검진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인 만큼 건강검진 미수검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해야 함. 이에 건강검진에 대한 이해와 장애유형별 건강 통계 및 필요 서비스들을 살펴보고 장애인 건강검진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함



01 건강검진에 대한 이해¹

■ 건강검진의 법적 근거

- 건강검진이란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건강검진기관을 통해 진찰 및 상담, 이학적 검사, 진단검사, 병리검사, 영상의학 검사 등 의학적 검진을 시행하는 것을 말함
- 다양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나 검진 사업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보건학적 타당성을 가진 검진 프로그램의 부재 및 성·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건강검진 실시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어, 2008년 3월 「건강검진기본법」이 제정됨
- 「건강검진기본법」제2조(기본이념)에는 국가건강검진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 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명시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은 「모자보건법」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학교보건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건강검사,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 「의료급여법」에 따른 건강검진, 「암관리법」에 따른 암검진, 「노인복지법」에 따른 건강진단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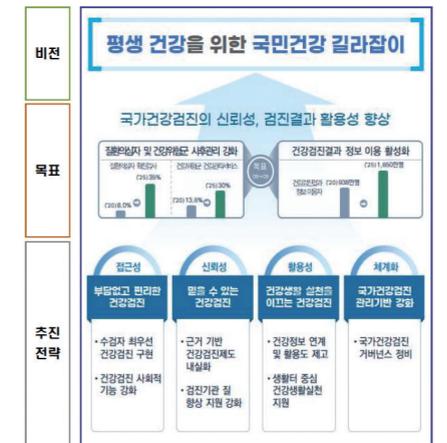
■ 평생 건강을 위한 국민건강 길라잡이,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

- 정부는 「건강검진기본법」(제11조)에 따라 국가건강검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건강검진 종합계획을 수립함. 2011년부터 5년 주기로 계획을 수립하여, '21년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1년~'25년)을 발표함

표1 제1차, 제2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 추진방향

| 구분 | 제1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11~'15년) | 제2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16~'20년) |
|-------|--|--|
| 비전 | 국가건강검진, 온 국민의 건강한 미래 | 상담서비스 및 ICT 기반의 수요자 중심 스마트 건강검진체계 |
| 목표 | 검진의 질 향상, 형평성 제고, 질병부담 감소 |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관리에 효과적인 건강검진체계로 전환 |
| 중점 과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확하고 신뢰받는 검진 · 전 국민 평생 건강관리체계 구축 · 사후관리가 강화된 검진 · 미래지향적 IT 검진 · 생애주기별로 발전하는 검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속한 검진-치료 건강관리연계 · Big Data와 ICT 융합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건강검진체계 구축 · 건강취약계층 지원 확대 · 근거 기반의 생애주기별 검진 체계 구축 · 바람직한 건강검진 정보 제공 · 국가건강검진 운영체계 재정비 · 검진기관 질 관리 및 질 향상 지원 |

그림1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 추진방향



-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은 4대 추진전략과 7대 추진과제, 37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있음
- 핵심과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검진 프로그램 개편, 건강검진 마이데이터 등 개인건강기록 관리·지원 고도화, 건강검진 근거 타당성 평가 및 검진기관 질 관리 강화임
- 중점과제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지원 확대 등 장애인 수검여건 개선, 건강검진 사각지대(요양병원입소자, 비사무직근로자 등) 해소를 위한 출장검진 기준 개정,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주기 전반

¹ 제3차('21년~'25년)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 재구성



조정, 아동·청소년 건강검진 통합(학생+학교밖청소년) 등 관리체계 일원화, 영유아검진 미수검 정보 기반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검진항목 타당성 전문연구센터 지정 및 재평가 제도화, 검진기관 질 관리 중심 평가항목 개선, 검진 결과 조회 및 건강기록 입력 등 자가건강관리 지원 콘텐츠 고도화, 건강생활 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추진, 건강친화기업인증제 참여 기업 종사자 등 근로자 건강관리 지원, 국가건강검진위원회 기능 정비 및 대국민 의견수렴 채널 마련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확대 등 장애인의 수검 여건 개선'을 중점과제로 선정하는 등 장애인의 건강검진기관 접근 어려움은 해결해야할 중대한 사안임

■ **생애주기별 국가건강검진 실시체계**

- 2008년 「건강검진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건강검진,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건강검진 실시,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국가암조기검진 사업등을 실시함
- 2010년 제1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이후 암검진 본인부담률 10%로 하향('10년),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만4세 확대('10년), 의료급여 일반건강검진 실시('12년), 66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생애전환기 검진실시('18년), 대장암검진 본인부담금 10% 폐지('18년) 폐암검진 신설('19년) 등 변화하며 지금의 검진 체계를 구축함

① **영유아(0~5세) 영유아건강검진**

| | 건강보험 가입자 | 의료수급권자 |
|--------|-----------------------------------|------------|
| 근거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 의료급여법 제14조 |
| 대상 | 만0~5세 전체 영유아 | |
| 검진주기 | 생후 14일, 4·9·18·30·42·54·66개월(총8회) | |
| 검진수행주체 | 국민건강보험공단 | 시·군·구(보건소) |
| 비용부담 | 본인부담없음 | 본인부담없음 |
| 재원 | 건강보험재정 | 국고 및 지방비 |

② **학동기(6~18세) 학생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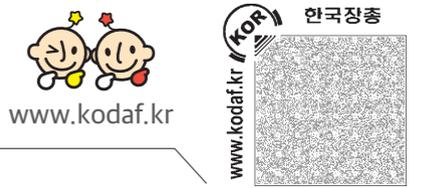
| | 취학 학동기 | 비취학 학동기 |
|--------|------------------------------|----------------|
| 근거법령 | 학교보건법 제7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6조 |
| 대상 | 만6~18세 전 취학학동 | 만9~18세 학교밖 청소년 |
| 검진주기 | 초등1·4학년, 중등 1학년, 고등1학년 (총4회) | 3년 1회 |
| 검진수행주체 | 학교장 | 여성가족부 |
| 비용부담 | 본인부담없음 | 본인부담없음 |

③ **성인기(19~64세)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 | 건강보험 가입자 | 의료수급권자 |
|--------|---|-----------------------|
| 근거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암관리법 제11조 | 의료급여법 제14조, 암관리법 제11조 |
| 대상 |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만20세 피부양자 및 세대원 | 만 19~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
| 검진주기 | 2년 1회(비사무직 1년 1회) | 2년 1회 |
| 검진수행주체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군·구(보건소) | 시·군·구(보건소) |
| 비용부담 | 일반건강검진 : 본인부담없음 암검진 보험료 상위 60% 본인부담 10%(자궁경부암, 대장암은 본인부담 없음), 보험료 하위 60% 본인부담 없음 | 본인부담없음 |
| 재원 | 건강보험재정, 국고 및 지방비(암검진 보험료 하위 60% 대상자에 10% 지원) | 국고 및 지방비 |

④ **노년기(65세 이상)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 | 건강보험 가입자 | 의료수급권자 |
|--------|---|--|
| 근거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암관리법 제11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의료급여법 제14조, 암관리법 제11조 |
| 대상 |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만20세 피부양자 및 세대원 | 만66세 이상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만65세 이상 건강진단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시·군·구에서 실시 |
| 검진주기 | 2년 1회(비사무직 1년 1회) | 2년 1회 |
| 검진수행주체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군·구(보건소) | 시·군·구(보건소) |
| 비용부담 | 일반건강검진 : 본인부담없음 암검진 보험료 상위 50% 본인부담 10%(자궁경부암, 대장암은 본인부담 없음), 보험료 하위 50% 본인부담 없음 | 본인부담없음 |
| 재원 | 건강보험재정, 국고 및 지방비(암검진 보험료 하위 50% 대상자에 10% 지원) | 국고 및 지방비 |



■ **국가건강검진 목표 질환과 연계한 검사 항목**

- 생애주기별 건강 목표 질환과 연계한 검사 항목을 두어 검진하고 있음

① **영유아 건강검진**

| 목표질환 | 검사항목 |
|--------------------------|---------------------|
| 성장이상 (발육지연, 과체중, 소두증 등) | 키, 몸무게, 머리둘레 등 신체계측 |
| 발달이상 (정신지체, 자폐증, 행동장애 등) | 발달검사 |
| 사고 (안전사고, 수면 중 들연사 등) | 안전교육, 수면교육 |
| 영양 (모유수유, 영양결핍, 영양과잉) | 영양교육 |
| 청각 이상(난청) | 청각문진, 귓속말 검사 |
| 시각 이상(약시, 사시 등) | 시각문진, 시각 및 청력검사 |
| 구강 이상 (치아우식증, 치은비대 등) | 구강시진 및 구강보건교육 |

② **학생건강검진**

| 목표질환 | 검사항목 |
|-----------|----------------------|
| 고혈압 | 혈압측정 |
| 시력측정, 안질환 | 시력측정 등 눈 검사 |
| 청력, 귓병 | 청력 등 귀검사 |
| 콧병 | 부비동염, 비염 등 검사 |
| 목병 | 편도선비대, 갑상샘비대 등 검사 |
| 피부병 | 아토피성피부염, 전염성피부염 등 검사 |
| 척추 | 척추측만증 검사 |
| 허리둘레 | 허리둘레 측정 |
| 빈혈 | 혈색소 혈액검사 |
| 간장질환 | |
| 이상지질혈증 | 혈액검사 |
| 당뇨병 | |
| 결핵 | 흉부방사선촬영 |
| 신장질환 | 소변검사(요단백, 요잠혈) |
| 구강검진 | 치아강태, 구강상태 |

③ **학교밖청소년 건강검진**

| 목표질환 | 검사항목 |
|-----------------------------|-----------------|
| 학생건강검진 목표질환과 동일 | 학생건강검진 목표질환과 동일 |
| B형, C형 간염 | 혈액검사 |
| 감염병 질환 (매독, HIV, 임질, 클라미디아) | |
| 고혈압, 당뇨병, 신장질환, 이상지질혈증 등 | 질환의심자 대상 확진검사 |

④ **일반건강검진**

| 목표질환 | 검사항목 |
|---|------------------------------------|
| 비만, 시각이상, 청각이상, 고혈압, 건강위험요소 파악 | 진찰 및 상담, 문진, 혈압 측정, 건강위험평가 |
| 폐결핵, 흉부질환 | 흉부방사선 촬영 |
| 신장질환 | 소변검사 |
| 빈혈 등 | 혈액검사 |
| 당뇨병 | |
| 이상지질혈증 | |
| B형 간염 | 혈액검사 |
| 간질환 | |
| 만성 신장질환 | KDSQ-C 검사 및 상담 |
| 인지기능장애 (66세 이상 2년마다) | |
| 골다공증(54·66세 여성) | 방사선 또는 초음파 |
| 노인신체기능(66·70·90세) | 낙상검사 |
| 생활습관평가(40·50·60·70세) | 흡연, 음주, 운동, 영양, 비만 |
| 우울증(해당 연령 (20·30·40·50·60·70세)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 | PHQ-9 검사 |
| 구강검진 | 문진, 상담, 교육, 시진 검사, 치면세균막 검사(만 40세) |

⑤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검진**

| 목표질환 | 검사항목 |
|--------------------------|--------------------|
| 진찰 및 상담 | 의사 문진 및 진찰 |
| 골다공증(66세 여성) | 방사선 또는 초음파 |
| 노인신체기능(66·70·80세) | 낙상검사 |
| 생활습관평가(70세) | 흡연, 음주, 운동, 영양, 비만 |
| 우울증(70세를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 | PHQ-9검사 |
| 인지기능장애 (66세 이상 2년마다) | KDSQ-C 검사 및 상담 |

■ **건강검진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

-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검진기관의 지정)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가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함
- 2019년 기준으로 종합병원(346개소), 병원(1,160개소), 의원(8,899개소), 보건기관(157개소), 치과병원(196개소), 치과의원(12,272개소) 총 23,030개소에서 검진하고 있음



국가건강검진으로 국민의 만성질환과 암관리 수준 향상

- 국민건강영양조사²에 따르면 고혈압, 당뇨병 인지율, 치료율과 조절율이 향상되었고, 국가암검진을 통한 의료기관 조기방문으로 암 종의 5년 생존율은 전반적으로 향상됨. 조기병원방문율³ 5대 암을 살펴보면 대장암 76.9%, 위암 73.1%, 간암 60.1%, 자궁경부암 57.0%, 유방암 48.4%를 발견⁴하여 진료를 받음
- 당뇨병, 고혈압 등 주요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및 사망률(인구 10만명당)은 지속적으로 감소함. 국가암검진에 포함된 5대암(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에 의한 사망률은 같은 기간 전반적으로 감소

* 당뇨병에 의한 사망률⁵은 '11년 인구 10만명 당 21.5명에서 '19년 15.8명으로 감소. 뇌혈관질환에 의한 사망률은 '11년 인구 10만명 당 50.7명에서 '19년 42.0명으로 감소

02 통계⁶로 본 장애인 건강과 건강검진 정책

장애인 건강 척도, 건강보건통계

- 국립재활원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의 협조를 받아 국가 단위의 장애인 건강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 매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를 산출함
-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는 「장애인건강권법」 제11조, 통계법 제18조에 근거해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약 264만명을 대상으로 함
- 통계 내용은 건강검진, 건강형태,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동반질환, 다빈도질환, 의료이용, 사망원인 등 7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2 국민건강영양조사, 질병관리청(2020)
 3 조기병원방문율=(180일 이내 암 진료를 받은 자/건강검진 이상소견자)*100
 4 자료 :질병관리청, 중앙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 '2020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 통계청, 사망원인통계(각 년도)
 5 국립재활원 '장애인 건강 이슈 통계로 말한다' 보도자료(2022.4.21.) 재구성
 6 다빈도 질환은 연간 진료환자 발생이 많은 상위 질환의 순위로 의료이용시 주상병을 이용하여 연간 진료인원 기준으로 산출

장애인 유질환자 비율, 비장애인보다 2.1배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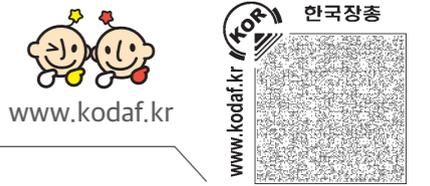
- 장애인 일반건강검진 판정결과 정상이 21.5%, 질환 의심 31.9%, 유질환자 46.6%로, 정상판정 비율은 비장애인 45.2%에 비해 약 2.1배 낮고, 유질환자 비율은 비장애인 22.6%보다 약 2.1배 높은 수준임
-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위암의심·위암 비율이 각각 2배 높고, 대장암 판정결과 분변잠혈반응검사가 비장애인에 비해 양성⁷이 1.4%p 높음. 간암검진은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추적검사요망과 간암 의심이 각각 1.6%p, 0.1%p 높은 수준. 유방암검진 판정결과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양성질환이 0.1%p 높은 수준
-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빈혈증의심(3.7%), 신장 질환의심(10.6%), 기타흉부질환의심(10.0%), 기타 질환의심(9.5%)의 비율이 각각 2.6배, 2.4배, 2.0배 높은 수준임.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고혈압(37.8%), 당뇨(17.4%), 이상지질혈증(11.6%)이 각각 2.2배, 2.5배, 1.8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장애인 다빈도질환, 동반질환 1위는?

- 장애인의 다빈도질환⁷은 치은염 및 치주질환, 급성기관지염, 등통증,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무릎 관절증, 2형 당뇨병 등 주요 만성질환이 상위 분포에 있음.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은 상위 20개 중 6개 항목으로 등통증, 무릎관절증, 연조직 장애, 기타 척추병증, 어깨 병변, 기타 관절장애로 분포됨

표2 2019년 장애인 장애유형별 다빈도질환 순위

| 장애유형 | 1위 | 2위 | 3위 | 4위 | 5위 | |
|-------|-----|------------|---------|--------------|--------------|--------|
| 외부 장애 | 지체 | 치은염 및 치주질환 | 등통증 |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 급성 기관지염 | 무릎 관절증 |
| | 뇌병변 | 치은염 및 치주질환 | 뇌경색증 | 급성 기관지염 |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 등통증 |
| | 시각 | 치은염 및 치주질환 | 급성 기관지염 |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 등통증 | 2형 당뇨병 |



| | | | | | | |
|--------|-------|----------------|------------|------------------|----------------|------------|
| 외부 장애 | 청각 |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 치은염 및 치주질환 | 등통증 | 급성 기관지염 | 무릎 관절증 |
| | 언어 | 급성 기관지염 | 치은염 및 치주질환 | 등통증 | 뇌경색증 | 치아 우식 |
| | 안면 | 치은염 및 치주질환 | 급성 기관지염 | 등통증 |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 기타연조직 장애 |
| 내부 장애 | 신장 | 만성 신장병 | 치은염 및 치주질환 | 이식된 기관 및 조직의상태 | 등통증 | 2형 당뇨병 |
| | 심장 | 치은염 및 치주질환 | 급성 기관지염 | 등통증 | 이식된 기관 및 조직의상태 | 2형 당뇨병 |
| | 호흡기 | 기타 만성 폐색성 폐질환 | 치은염 및 치주질환 | 급성 기관지염 | 천식 | 등통증 |
| | 간 | 이식된 기관 및 조직의상태 | 치은염 및 치주질환 |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신생물 | 급성 기관지염 | 2형 당뇨병 |
| | 장루·요루 | 직장의 악성 신생물 | 치은염 및 치주질환 |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 급성 기관지염 | 등통증 |
| | 뇌전증 | 뇌전증 | 치은염 및 치주질환 | 급성 기관지염 | 등통증 | 기타연조직 장애 |
| | 지적 | 급성 기관지염 | 치은염 및 치주질환 | 앨러지성 비염 | 치아 우식 | 등통증 |
| 정신적 장애 | 자폐성 | 전반 발달장애 | 급성 기관지염 | 앨러지성 비염 | 치아 우식 | 치은염 및 치주질환 |
| | 정신 | 조현병 | 치은염 및 치주질환 | 급성 기관지염 | 2형 당뇨병 | 등통증 |

- 장애인의 동반질환⁸은 위염 및 십이지장염,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이 상위 순위에 분포함. 장애인의 주요 만성질환인 고혈압은 비장애인에 비해 2.7배 격차를 보이고, 당뇨병은 비장애인과 2.8배 차이가 있음

표3 2019년 장애인 장애유형별 동반질환 순위

| 장애유형 | 1위 | 2위 | 3위 | 4위 | 5위 | |
|-------|----|--------------------|----------------------|-----------------|-----------------------------|-------------|
| 외부 장애 | 지체 | 위염 및 십이지장염 (81.6%) |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50.7%) | 앨러지성 비염 (50.2%) | 지질단백질 대사장애 및 기타 지질증 (49.8%) | 등통증 (48.8%) |

8 동반질환은 의료이용을 통해 진료받은 질환으로 주 부상병을 이용하여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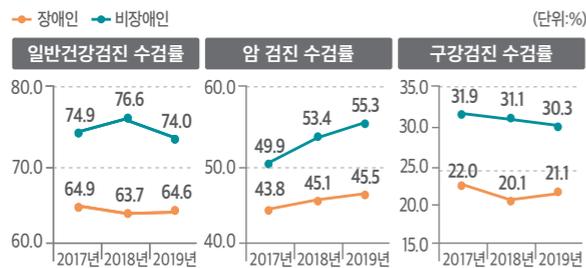
| | | | | | | |
|-------|-------------|------------------------|-----------------------------|-----------------------------|-----------------------------|-----------------------------|
| 외부 장애 | 뇌병변 |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61.4%) | 위염 및 십이지장염 (60.4%) | 지질단백질 대사장애 및 기타 지질증 (46.8%) | 뇌경색증 (35.7%) | 앨러지성 비염 (33.3%) |
| | 시각 | 위염 및 십이지장염 (77.8%) | 앨러지성 비염 (48.4%) |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47.8%) | 지질단백질 대사장애 및 기타 지질증 (46.9%) | 급성 기관지염 (42.5%) |
| | 청각 | 위염 및 십이지장염 (82.4%) |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56.2%) | 앨러지성 비염 (52.9%) | 등통증 (49.1%) | 지질단백질 대사장애 및 기타 지질증 (49.1%) |
| 내부 장애 | 언어 | 위염 및 십이지장염 (63.6%) | 앨러지성 비염 (51.6%) | 급성 기관지염 (47.2%) |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38.1%) | 지질단백질 대사장애 및 기타 지질증 (37.6%) |
| | 안면 | 위염 및 십이지장염 (77.6%) | 앨러지성 비염 (51.0%) | 급성 기관지염 (44.3%) | 치은염 및 치주질환 (40.6%) | 위·식도 역류병 (38.4%) |
| | 신장 | 만성 신장병 (90.0%) |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75.0%) | 지질단백질 대사장애 및 기타 지질증 (69.2%) | 위염 및 십이지장염 (66.0%) | 2형 당뇨병 (52.8%) |
| | 심장 | 위염 및 십이지장염 (74.9%) | 지질단백질 대사장애 및 기타 지질증 (63.9%) |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62.9%) | 앨러지성 비염 (53.7%) | 급성 기관지염 (48.0%) |
| | 호흡기 | 위염 및 십이지장염 (77.7%) | 기타 만성 폐색성 폐질환 (75.7%) | 천식 (67.0%) | 앨러지성 비염 (66.7%) | 위·식도 역류병 (53.1%) |
| | 간 | 이식된 기관 및 조직의상태 (94.7%) | 위염 및 십이지장염 (68.5%) | 만성 바이러스 간염 (55.4%) | 지질단백질 대사장애 및 기타 지질증 (49.0%) | 위·식도 역류병 (46.8%) |
| | 장루·요루 | 위염 및 십이지장염 (76.2%) |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50.5%) | 지질단백질 대사장애 및 기타 지질증 (48.0%) | 앨러지성 비염 (43.8%) | 위·식도 역류병 (42.3%) |
| 뇌전증 | 뇌전증 (95.3%) | 위염 및 십이지장염 (77.2%) | 앨러지성 비염 (49.2%) | 치은염 및 치주질환 (41.7%) | 등통증 (41.6%)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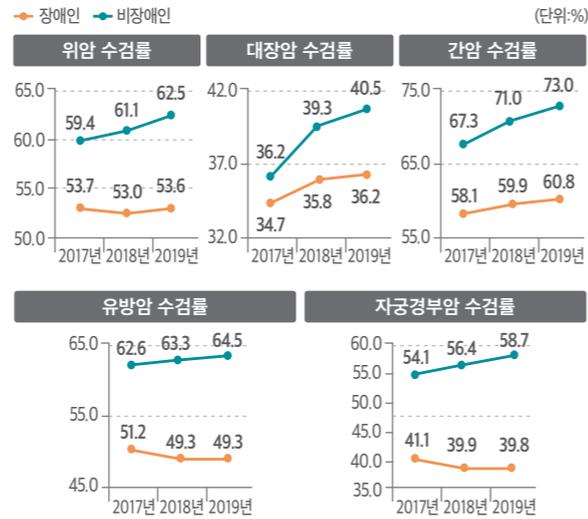
| | | | | | | |
|--------|-----|--------------------|--------------------|--------------------|--------------------|-----------------------------|
| 정신적 장애 | 지적 | 위염 및 십이지장염 (62.9%) | 알러지성 비염 (53.0%) | 급성 기관지염 (48.2%) | 치은염 및 치주질환 (27.7%) | 기타연조직 장애 (24.0%) |
| | 자폐성 | 알러지성 비염 (61.4%) | 급성 기관지염 (57.9%) | 전반 발달장애 (51.6%) | 위염 및 십이지장염 (42.4%) | 치아우식 (24.2%) |
| | 정신 | 조현병 (85.8%) | 위염 및 십이지장염 (58.8%) | 기타 기능성 장장애 (42.2%) | 이차성 파킨슨증 (35.2%) | 지질단백질 대사장애 및 기타 지질증 (34.5%) |

장애인 건강검진, 여전히 낮은 수검률 보여

- 장애인 건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 암 검진, 구강검진 세 가지 건강검진을 분석함
- 장애인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17년~'18년 감소하다가 '18년~'19년 증가함. 암 검진 수검률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구강검진 수검률은 '17년~'18년 감소하다가 '18년~'19년 증가함. '19년 기준 장애인 일반검진 수검률(64.6%)은 비장애인 일반검진(74.0%)과의 격차라 9.34%p이고, 장애인 암검진(45.5%)은 비장애인 암 검진(55.3%)로 9.8%p 차이 나며, 장애인 구강검진(21.1%)은 비장애인 구강검진(30.3%)와 9.2%p 격차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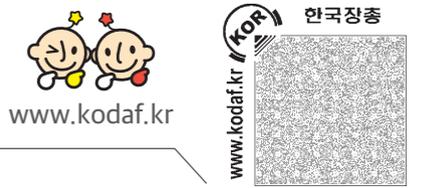


- 장애유형 중 자폐성장애가 일반건강검진(42.9%)·암검진(6.7%)이 가장 낮고, 구강검진은 뇌병변 장애의 수검률이 13.6%로 가장 낮게 나타남
- 3년간 장애인 암검진종별 수검률은 위암수검율은 53%대를 유지하고 대장암과 간암 수검률은 미미하게 상승했지만 유방암, 자궁경부암 수검률 모두 감소함



장애인 건강검진을 위한 법적 근거

- 「장애인건강권법」 제7조(장애인 건강검진사업)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질환예방을 위한 건강검진 사업(이하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 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에게 맞춤형 건강검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정도, 연령, 모부성권 보장, 성별 등의 특성 및 생애주기에 맞는 건강검진 항목을 설계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검진을 받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장애인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⑥장애인건강검진사업의 범위 및 지원 대상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제5항에 따른 검진기관의 인력 시설 및 장비 등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건강권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3조(검진기관의 지정 취소)에



따라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이 지정·취소됨.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과 같음

- 1. 대상기관: 가.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일반검진기관 및 암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나.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구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 2. 인력기준: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이동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1명 이상 두되, 이 중 한국수어 통역사 자격을 갖춘 인력(업무 위탁을 받은자 포함)을 1명 이상 두어야 함
- 3. 시설기준: 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나.매개공간 접근성, 다.주출입구, 라.안내표지 등, 마.승강기, 바.경사로, 사.계단, 아.접수대, 자.내부 건강검진 경로, 차.장애인용 화장실등, 카.경보 피난시설 (단,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 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가목부터 카목까지의 시설 기준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본다)
- 4. 운영기준: 가. 장애인이 요청할 경우 건강검진 전과정을 안내 보조하는 동행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나.청각장애인 또는 발달장애인 등을 위하여 검진 내용 절차 등을 알기 쉽게 소개하는 서면 안내문을 검진실 내부에 갖춰야 함. 다. 대기 중 검진순서를 알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을 위한 영상모니터 등 시각정보시스템,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각안내시스템을 설치 운영해야 함. 라.건강검진 안내 예약 등을 위한 웹사이트를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받도록 노력해야 함.



휠체어 체중계

특수휠체어



키즈보이스 스마트

소보로태블릿



성인기저귀 교환대

장애특화 신장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현황

- 장애친화 건강검진 장비로는 휠체어 체중계, 장애특화 신장계, 체성분 측정기, 이동식 전동리프트, 영상활대비디오, 대화용 장치, 점자 프린터, 특수 휠체어, 성인기저귀 교환대 등이 있음

- 보건복지부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18년~'22년)을 통해 '22년까지 장애친화 건강검진 기관 100곳을 지정하겠다고 밝혔음. 공모에 선정되면 시설·장비비(1억 3800만원/1개소)를 지원하고,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로 중증장애인 검진 시 기본검진 비용 외 27,760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민간의 저조한 참여로 '24년까지 100곳을 지정하겠다고 계획을 변경함. '22년 6월 기준 19곳이 지정되었지만 준비 등의 이유로 9곳만 운영 중임



표4 전국 장애인화 건강검진기관 운영현황⁹

| No | 지역 | 의료기관명 | 기관연락처 | 장애인화 서비스 |
|----|----|----------------|----------------|----------|
| 1 | 서울 | 서울의료원 | 02-2276-7000 | 완료 |
| 2 | | 국립재활원 | 02-901-1400 | 완료 |
| 3 | 부산 | 부산의료원 | 051-607-2061 | 준비중 |
| 4 | | 부산성모병원 | 051-933-7651 | 완료 |
| 5 | | 연제일신병원 | 051-978-2201 | 준비중 |
| 6 | 인천 | 인천의료원 | 032-580-6037 | 완료 |
| 7 | 대전 | 대청병원 | 1899-6075 | 준비중 |
| 8 | 경기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 031-888-0770~1 | 완료 |
| 9 | 강원 | 원주의료원 | 033-760-4586 | 완료 |
| 10 | 전북 | 대자인병원 | 063-250-8770 | 준비중 |
| 11 | 경북 | 안동의료원 | 054-850-6363 | 완료 |
| 12 | |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 | 054-468-9757 | 준비중 |
| 13 | | 경북권역재활병원 | 053-230-8900 | 준비중 |
| 14 | 경남 | 마산의료원 | 055-249-1234~5 | 완료 |
| 15 |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 055-360-1280 | 준비중 |
| 16 | | 진주고려병원 | 055-751-2412~3 | 준비중 |
| 17 | 제주 | 조은금강병원 | 055-330-0222 | 준비중 |
| 18 | | 서귀포의료원 | 064-730-3020 | 완료 |
| 19 | | 중앙병원 | 064-786-7282 | 준비중 |

장애인화 건강검진 기관 살펴보기

- 장애인화 건강검진 기관이 운영되기 위해서 공모접수, 지정, 설비 및 공사 등을 완료하고 복지부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함
- 장애인화 건강검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립재활원, 인천의료원, 안동의료원의 사례¹⁰를 보고자 함

⁹ 출처 : 국립재활원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홈페이지(22.04 기준)

¹⁰ 장애인화 건강검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6곳(서울의료원, 국립재활원, 경기도의료원, 인천의료원, 안동의료원, 원주의료원)에 문의하였고 3곳에서 서면 답변 내용을 재구성하여 작성함.

재활전문 국립중앙기관 국립재활원, 국내 최초 장애인건강검진 센터

- (서비스 시작) 2021년 10월,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Barrier Free, BF) 인증을 받아 장애인건강검진센터 개소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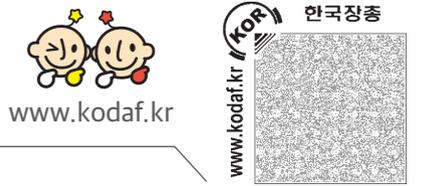
- (장애인화건강검진 항목)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검진, 암검진, 종합검진, 장애특화검진

- (특화 장비 및 서비스) 장애이해 교육 실시로 직원들의 장애 이해도 높음. 수어통역사 상주, 의사소통 보조 장치(키즈보이스 스마트, 소보로태블릿)를 구비하여 청각 및 발달장애인들의 의사소통을 돕고 있음. 휠체어 체중계, 장애특화 신장계 등 필수 장애인화 건강검진 장비 보유함. 국가건강검진 뿐 아니라 생애주기에 맞는 종합검진, 장애특화검진 중 척수손상 프로그램, 뇌손상 프로그램 진행. 장애인 건강검진 관련 연구 개발 수행 중이며 검진 이후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사후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 중에 있음.

- (이용 현황) 장애유형중 지체, 지적, 뇌병변 장애유형의 이용률이 높음.

- (활성화 방안) 장애인 건강검진은 비장애인 건강검진에 비해 시간이 많이 걸림. 지역사회의 적극적 참여와 종사자들의 숙련이 무엇보다도 필요함.

- (이용자 후기) “자궁암 검진실이 넓어 휠체어를 자유 자재로 사용 할 수 있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유방x선 촬영시 휠체어 환자임에도 타 병원은 일어서게만 들어 두려웠는데 여기서는 보조인을 통해서 편안하게 찍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장애인이 되어 키, 몸무게를 재기 어려웠는데 누워서 키와 몸무게를 한꺼번에 재어 보니 좋았습니다.”, “장애인이어서 검진을 거부당한 적이 있었는데 이곳은 장애인 전문이라서 너무 좋았습니다.”



전국 최고의 지역책임의료기관, 인천의료원

- (서비스 시작) 2019년 지정되어 2020년 6월부터 장애인화 건강검진 서비스 운영

- (건강검진 항목)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검진, 암검진, 종합검진

- (특화 장비 및 서비스) 건강검진 예약 또는 현장 접수 시 장애인이 요청할 경우 건강검진 전 과정 안내 보조하는 동행서비스 제공. 한국수어통역사 배치. 청각장애인 또는 발달장애인 등을 위한 검진내용과 절차가 적힌 서면 안내문 배치. 대기 중 검진순서를 알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을 위한 영상모니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각안내 시스템 설치 운영.

- (이용 현황) 지체 뇌병변 및 정신적 장애(지적, 자폐성, 정신) 유형이 많이 이용

- (활성화 방안) 40~50대 수검자들이 처음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들이 많았음.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에 대한 안내와 장애인화건강검진 홍보가 필요함.

- (이용자 후기) “장애인화 건강검진센터라 그런지 직원들이 장애인을 대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워서 좋아요”, “정확한 몸무게를 알 수 있게 되었고, 누워서 흉부 X-ray 검사를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지역사회 장애인과 함께한다. 경상북도 안동의료원 건강증진센터

- (서비스 시작) 2018년 지정되어 2019년부터 장애인화 건강검진 서비스 운영

- (장애인화건강검진 항목)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검진, 암검진, 종합검진

- (특화 장비 및 서비스) 동행서비스 제공, 수어통역사 배치, 국가정보화기본법 인증 받은 웹사이트 운영(홈페이지내 사전 체크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 이동

동선 최소화, 종사자용 매뉴얼 정기교육 실시. 지역사회 장애인 복지관 및 장애인 기관 등과 협약을 통한 홍보

- (이용 현황) 중증 장애인의 이용이 많음.

- (활성화 방안) 장애인 택시 등 건강검진센터까지 이동 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보임.

- (이용자 후기) “검진 예약부터 종료까지 동행서비스가 지원되어서 좋았습니다”, “수어통역사가 자세히 설명 해줘서 이해가 되었어요”

- 장애인들은 검진 예약부터 진행까지 의사소통에 대한 지원, 1:1 동행 서비스, 장애 유형에 맞는 설비 이용 등 검진기관의 인적 물리적 서비스에 만족했으며 의료진과 직원들이 장애에 대한 이해가 높아 편안함을 느꼈다고 밝힘
- 국립재활원, 인천의료원, 안동의료원 세 기관 모두 서비스를 시작하지 오래되지 않았고, 코로나19로 운영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함
- 수검을 받은 장애인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아, 홍보를 통해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희망함

03 장애유형별로 본 건강·검진 이야기¹¹

- 장애인건강보통계에서도 보았듯이 장애는 유형과 정도에 따라 다양한 건강차이를 보이고 있음
- 장애유형별 단체 및 당사자들이 자주 발병하는 질환과 건강검진의 어려움, 필요한 건강서비스 지원 제도 등의 의견을 제시함

“주기적인 방광검사가 필요해요”, 지체(척수)장애인

- (자주 발병하는 질환) 척수손상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¹¹ 장애유형별 단체 서면 질의·답변을 통해 재구성함.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이사, (사)한국뇌병변인권장애인인권협회 최명신 사무처장,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이연주 사무총장, (사)한국농아인협회 정희찬 상임이사,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 이영정 사무총장, (사)지체장애인협회 윤수정 부장, (사)자폐인사랑협회 박정숙 부장, (사)파도순 정신장애인 당사자 19명,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김혜영 사무총장



- 요로감염(방광염, 신우신염), 욕창, 신경인성 통증, 근골격계 통증, 관절 구축 등
- (검진의 어려움 및 필요서비스) 접근성과 인적서비스 확대 필요. 특히 의료진의 척수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검진의 어려움이 있고 병원 접근성 및 비용부담이 있음
-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되었으면 하는 검사) 방광검사(방광내시경, 방광초음파), 신장(콩팥)검사, 대장내시경(분변잠혈검사 아님), 골밀도 검사, 65가지 검사 가능한 혈액종합검사
- (지원되었으면 하는 건강제도) 방문재활(방문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확대, 건강모니터링(장애인건강주치의 3차 병원까지 확대), 건강포털에 정보 제공(건강권 관련 정보, 검사 일정, 손상 후 주기별 정보 등), 욕창치료시스템

■ “관절 구축과 통증으로 고생해요”, 뇌병변장애인

- (자주 발병하는 질환) 간질, 경직·불수의 운동, 관절구축, 통증, 근골격계 질환
- (검진의 어려움 및 필요서비스) 정보제공기관 부재, 뇌병변장애인은 자신의 신체노출을 꺼려 장애인과 함께 건강검진을 하고 싶어하지 않음. 장애 특성에 맞는 의복, 촬영이 안되는 검진기관이 대부분임
-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되었으면 하는 검사) 신경체계 손상에 따른 몸의 자세, 체간 유지, 복합장애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관리 할 수 있는 검진
- (지원되었으면 하는 건강제도) 심리적 의사소통 지원, 지속가능한 재활치료(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중증·최중증 장애인을 위한 가족지원체계

■ “눈질환자는 치매에 취약해요”, 시각장애인

- (자주 발병하는 질환) 적은 활동량으로 비만으로 인해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질환, 구강질환, 안과질환
- (검진의 어려움 및 필요서비스) 대장내시경을 위한 물약 복용(시간대, 양 등)의 어려움. 대변검사를 하고 싶어도 채취용기 사용법이 불가능하여 검진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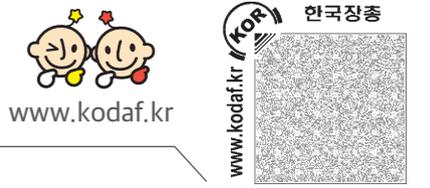
- 제외함. 형식적인 구강검진이 아닌 구강질환 치료 연계 필요. 서류작성 및 검사실 이동 등의 인적서비스 필요. 건강검진기관까지의 이동서비스 필요. 건강검진결과서 점자 및 큰 글자 제공 필요
-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되었으면 하는 검사) 노인황반변성, 백내장, 당뇨관련안질환 등 눈 질환이 치매 위험이 높기 때문에 치매 검사 필요
- (지원되었으면 하는 건강제도) 시각장애인 약 배달 서비스, 원격진료, 근골격계 질환 치료가 가능한 안마원 건강보험 적용

■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안돼요”, 청각장애인

- (자주 발병하는 질환) 청력손실로 인한 야행성 평형장애, 이명
- (검진의 어려움 및 필요서비스) 전문의료수어가 부족해 정확한 명칭이나 지시의 전달에 오류 빈번함. 예로 고지혈증과 고혈압은 수어가 동일함. 전문의학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수어통역사 배치 필요
-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되었으면 하는 검사) 특별히 없음
- (지원되었으면 하는 건강제도) 모든 검사 과정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이 진행 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1년에 6번 이상 피검사해요. 검사 비용이 많이 듭니다”, 신장장애인

- (자주 발병하는 질환) 당뇨, 고혈압, 빈혈, 부정맥, 저혈압, 저혈당, 위장관계 합병증, 신경 근육 합병증 등. 요독증, 혈관석회화, 대사성산증 같은 심혈관 질환 위험인자를 동반하고 있음
- (검진의 어려움 및 필요서비스) 투석하는 신장장애인은 1개월에 1회 피검사를 하고 이식한 신장장애인은 2개월에 1회 피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신장장애인은 연1회 대장검사, 위장검사를 하고 있음. 국가 건강검진은 2년에 1회 진행되어 그 외의 검사는 다 개인 부담임. 신장장애인의 검진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되었으면 하는 검사) 심혈관 검사(부정맥)



- (지원되었으면 하는 건강제도) 조혈 호르몬 분비 문제로 조혈제 투여 받고 있음. 건강보험 기준이 11g/dL까지 보험적용이 되고 있음. 그 이상으로 투여하기 원하는 신장장애인들에게 조혈제 구입 비용 지원 필요. 대장검사 위장검사 연 1회 지원

■ “검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지적장애인

- (자주 발병하는 질환) 치주질환 등 치아관련 질환, 비만, 간장질환(지방간), 고혈압, 당뇨, 피부(아토피), 치매, 뇌전증, 관절염, 발작(간질성), 위염/식도염/십이지장염
- (검진의 어려움 및 필요서비스) 건강검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병원가기 어려움. 많은 움직임으로 X-ray 촬영 어려움. 병 발견이 어려워 발견시 상태가 심각한 경우가 많음. 비만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 필요
-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되었으면 하는 검사) 뇌 관련 촬영, 내부 기관 초음파 검진 등
- (지원되었으면 하는 건강제도) 건강검진 후 진료까지 이어지는 건강서비스, 의료진 대상 발달장애인의 돌발행동 이해 교육, 찾아가는 건강검진 등

■ “약을 많이 복용해 속이 아파요”, 자폐성장아인

- (자주 발병하는 질환) 당뇨, 우울증, 뇌전증, 아토피, 비염, 비만, 장기 약 복용으로 내분비 계통 간대사 질환 및 성호르몬 교란 등의 합병증
- (검진의 어려움 및 필요서비스) 대기자가 많을 경우 스트레스 및 불안 상승하기 때문에 별도의 대기 공간 필요. 검진시 움직이지 않게 잡아줘야하기 때문에 인력 지원 필수. 자폐에 대한 이해가 없는 의료진. 채혈과 치과 진료에 두려움이 큼
-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되었으면 하는 검사) 뇌파 검사, 간질환 대사(간기능, 간수치 검사), 호르몬 검사
- (지원되었으면 하는 건강제도) 장애인 치과 병원 확대 및 진료비 지원.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경우 진료코드F로 시작되어 실비보험 가입이 안되고 있어 실비 보험 가입할 수 있는 방안 필요. 발달 장애인 대리 처방. 가정내 기초대사 검사할 수 있는 물품 지원.

- 의사 및 종사자 발달 장애인에 대한 이해 교육 실시
- “낙인이 힘들어요”, 정신장애인
 - (자주 발병하는 질환) 우울증, 비만, 조현병, 망상, 디스크, 불면증
 - (검진의 어려움 및 필요서비스) 여성전용 센터 필요. 정신장애인 낙인으로 불편한 시선, 복잡한 절차, 수면 내시경의 비용 부담
 -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되었으면 하는 검사) 자율신경 검사, 스트레스 검사, 약물 과용 검사
 - (지원되었으면 하는 건강제도) 스트레스 관리 서비스, 심리상담 의료보험 지원, 급성기시 도움 요청 할 수 있는 서비스 필요, 동료 상담 서비스 등

■ “여성질환, 제대로 알고 싶어요”, 여성 장애인

- (자주 발병하는 질환) 질염, 골반염, 자궁내막증, 만소낭증, 자궁근종, 생리 불순 등의 부인과 질환이 공통적으로 나타남
- (검진의 어려움 및 필요서비스) 근거리에 진료기관이 없어 먼 거리로 검진을 받으러 가야하는 이동의 어려움. 유방암, 자궁암 등 여성 질환의 검사를 위한 특수 장비가 마련되어야 하나 대부분 장비가 없어 검사를 못받음
-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되었으면 하는 검사) 뇌,혈관 뼈질환을 검진 가능한 검사
- (지원되었으면 하는 건강제도) 중증 및 고령 장애인을 위한 치과진료 지원, 출산 전후 여성 장애인을 위한 ‘건강한 임신과 출산교실’ 서비스, 산후조리도우미 파견 지원 등

04 건강검진 어려움, 무엇이 문제인가?

■ 건강검진은 했지만, 검사를 하지 못했다?

- 국립재활원에서는 2017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건강



검진을 받은 51.2%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완수율을 조사해볼 결과, X-ray(흉부 방사선촬영) 검사 건수는 총 924건으로 집계됨. 이중 미촬영 건수는 232건으로 약 25%에 해당하는 장애인들이 X-ray검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짐

■ 신체계측을 할수 없어, 알고 있던 것으로 기입

- 2020년 지체·뇌병변·시각·청각 장애인 23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검진 접근성 저해요인과 개선방안 도출에 대한 질적연구¹²’를 진행함
- 연구에 참가한 장애인들은 과거 의료기관 방문 시 장애로 인해 발생했던 부정적인 경험들 때문에 건강검진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음. 어렵게 방문한 건강검진 기관에서 불친절한 의료진과 장애를 이해하지 못한 발언 등으로 또다시 상처를 받고 있다고 밝힘
- 비장애인 위주로 건강검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은 건강검진 예약부터 결과까지 모든 단계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토로했음. 의사소통의 문제는 건강검진 시간을 지연시키고 직원과 장애인 간의 오해를 불러오기도 함.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은 시설과 의료장비로 인하여 신체적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함. 촬영검사시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고통을 참아야 하고 의료장비와 마찰로 생기는 욕창의 위험에 노출됨. 특히 마취나 관장을 했을 때 회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체력이 많이 소모되어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포기하기도 함
-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 의사소통, 검진대나 의자로의 이동 지원 등 검진기관 내 보조 인력은 필수적임
- “장애인이란 밝히니 시도도 해보지 않고 예약을 받지 않아요”, “신체계측을 할 수 없으니 예전에 알고 있는 것으로 적었어요”, “검사를 할 수 없는 항목 중에 건강에 문제가 있을까봐 너무 걱정돼요”, “시각장애인인데 시력검사를 하라고 했어요.” 연구 참여자들은

비장애 중심의 의료기관 시스템과 환경에 대해 불이익이나 차별을 느낀다고 밝힘

■ 자폐성 장애인의 75%, 건강검진 받지 못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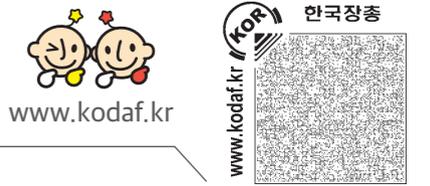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하는 등 장애인들의 검진센터 접근성을 확대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건강검진 수검률은 낮은 상태
- 2020 장애인실태조사를 활용한 장애인 건강검진 미수검 영향요인¹³ 발표에 따르면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이유로 별다른 증상이 없고 건강하다고 생각해서(32.9%), 이동하는 것이 불편해서(20.4%), 경제적인 이유(8.2%)로 꼽았고, 20~30대 장애인의 검진 미수검율이 57.3%로 높아 건강검진의 필요성을 안내할 필요가 있음
- 위 연구에 따르면, 장애유형별 건강검진 미수검률 현황은 자폐성장애인(72.5%), 지적장애인(58.1%), 정신장애인(46.3%), 뇌병변장애인(38.8%), 언어장애인(35.7%)로 나타남

05 장애인 건강검진 활성화를 위해서는?

■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해, 건강검진 기관 및 수검자 모니터링으로 제도 재정비

- 장애친화 건강검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과 수검자들의 모니터링이 필수적임. 중증뇌병변 장애인, 정신적(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인의 이용이 많다는 것은 기존 건강검진센터와의 차별이 확실하기 때문임. 장애인 이용자들이 만족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들을 분석해야 함. 또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탈의지원, 휠체어나 검진을 위해 이동하는 일을 돕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인력이 필수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말함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기준에 대한 논의도 있음.

12 장애인건강검진 접근성 저해요인과 개선방안 도출에 대한 질적 연구: 홍혜수 임명준 김의숙 최은숙 김정환, 보건행정학회지 2020;30(3):335-344
13 2022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컨퍼런스 자료집, 국립재활원



모든 장애유형이 접근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기준을 장애 유형별 특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추가 모델을 만들어 많은 민간 참여를 유도시킬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음

■ 비장애인 중심의 건강검진 설계, 장애유형 및 생애주기별 특화 검진항목 개발

- 국가건강검진은 비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항목으로 설계되어있음. 장애유형별 취약한 건강을 관리해야 함
- 매년, ‘장애인건강보건통계’를 발표하며 장애유형별 동반질환과 다빈도 질환을 분석하고 있음. 2차 연구를 통해 장애 유형별 특화 검진 항목과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체계를 설계해야 함

■ 공공의료기관에서 장애친화 건강검진 의무화

- 공공의료에서조차 외면하고 있는 장애인 건강을 민간에 책임을 넘기는 것은 어폐가 있음
- 2022년 2월,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지방의료원 35개소¹⁴를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의무 지정하도록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함
- 현재 지방의료원 8곳만 장애친화 건강검진 기관 지정을 받음. 나머지 27곳도 장애친화 건강검진 기관 지정으로 공공에서의 장애친화 검진기관 확대가 필요함

14 지방의료원 35개소 :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완료), 부산광역시의료원(준비중), 대구의료원, 인천광역시의료원(완료),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완료),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성남시의료원, 강원도 원주의료원(완료), 강원도 강릉의료원, 강원도 속초의료원, 강원도 영월의료원, 강원도 삼척의료원,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전라북도 진안군의료원,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전라남도 강진의료원, 전라남도 목포시의료원, 경상북도 포항의료원, 경상북도 안동의료원(완료), 경상북도 김천의료원, 경상북도 울진군의료원, 경상남도 마산의료원(완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완료)

■ 지속가능한 건강관리의 열쇠, 건강검진 이후 지역 사회와 연계한 건강관리 구축

- 중앙 및 지역 장애인보건복지지원센터에서는 지역 사회 내 장애인 건강증진 사업을 수행 함. 장애친화 건강검진 안내, 장애인 건강주치의 연계, 건강교육 프로그램 등 지역자원들과 연계해 만성질환 및 주요 질환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개별 맞춤형 중장기적인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장애인 다빈도 질환 1위인 치은염과 치주질환으로 나타나고 모든 장애유형에서 구강진료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함. 건강검진에서의 구강검사 후 치료할 수 있는 접근가능한 동네 치과들과 협업도 필수적임

■ 장애인 당사자, 의료진 및 종사자의 교육으로 배제되지 않는 건강검진 환경 조성

-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는 건강검진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임.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필수적으로 검진을 할 수 있게 해야 함
- 의료진 및 종사자들이 장애유형별 이해 교육을 통해 장애 감수성을 가져야 함

월간 한국장총 www.kodaf.kr

발행일 2022년 6월 30일 발행인 홍순봉 편집인 김동범 창간일 1999년 3월 29일

제 작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4층 T.02)783-0067 F.02)783-0069

※ 이 인쇄물의 오른쪽 윗부분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보이스아이)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재산관리서비스

참여자
모집
안내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란?

국가 책임 아래 국민연금공단이 발달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이 맡긴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서 발달장애인의 욕구와 의사를 반영한 개인별재정재원계획에 따라 꼭 필요한 곳에 신탁재산을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참여대상

만 19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 중

1) 지역사회 내 거주 2) 시설거주 3)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 사업 참여자

참여조건

-재산 중 금전(현금)만 관리 가능

-주 단위의 금전사용을 포함하는 계획 수립 *단순보관 불가

참여방법

신청서 작성후 asksupport@hanmail.net으로 발송

(신청서는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홈페이지 또는 신탁의사결정지원센터 블로그에서 다운로드 가능)

모집정보

모집인원 | 120명 (전국)

사업기간 | 2022년 5월 ~ 2023년 12월

문의

홈페이지 www.autismkorea.kr

전화 1544.6912